<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브릿지 조성사업>
아태 AI 헬스케어 글로벌 교차실증 참여
공모안내서

2026. 11.

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

목 차

Ⅰ. 사업 개요 ····· 01

1. 사업 목표 ····· 01
2. 추진 배경 및 필요성 ····· 02
3. 대상 분야의 정의 및 범위 ····· 04
4. 강원 AI 헬스케어 해외 진출 여건 ····· 05
5. 사업 추진계획 ····· 06
6. 추진 근거 및 관련 규정 ····· 07

Ⅱ. 사업 지원내용 ····· 08

1. 공모 개요 ····· 08
2.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····· 09
3. 지원 분야 ····· 11
4. 지원 내용 ····· 12

Ⅲ. 공고 및 선정 절차 ····· 14

1. 추진 일정 ····· 14
2. 평가방법 및 기준 ····· 15

Ⅳ. 사업신청 및 접수 ····· 17

1. 신청 및 접수 ····· 17
2. 문의처 ····· 17

Ⅴ. 기타 사항 ····· 18

1. 사업 관리 ····· 18
2. 사업비 산정요령 ····· 20
3. 기타사항 안내 ····· 22

※ 참고 사항 ····· 23

[붙임3] 수행계획서 작성안내 및 양식

2026년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브릿지 조성사업

Ⅰ. 사업개요

1. 사업 목표

사업목표	**(실 증)** 국내 사전검증을 거친 도내 AI 헬스케어 솔루션의 아태 지역 의료기관 현지 실증으로 **해외 실증 (1차년도 5건 / 2차년도 7건)** **(양방향)** 해외 기업·기관과 국내기업의 공동 교차 실증과 **해외 AI 기업·인재의 춘천·강릉 유입 및 정착 연계** **(사업화)** 실증 결과를 진출국 인허가 사전진단과 해외 수요처 협약으로 연결하여 **2차년도 국내·외 계약·투자 협의로 연계**
비전과 전략	**[비 전] 도내 AI 헬스케어 기업의 아태 시장 진출과 해외 기업과의 공동 실증 지원** **[전략1]** (빠른 실증) 상용화된 솔루션을 선정하여 협약 후 국내 사전검증을 거쳐 **해외 현지 실증** **[전략2]** (양방향 실증)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(아웃바운드)과 해외 기업·기관과의 **국내 공동 실증(인바운드) 지원** **[전략3]** (후속 연계) 실증을 마친 기업에 진출국 인허가 사전진단, **실증협약·업무협약 체결 지원**
중점 추진전략	○ 도내 의료기관에서 국내 사전검증을 먼저 수행, 해외 현지 실증 ○ 국내 데이터는 데이터안심존 폐쇄망에서 분석, 정보 보호 추진 ○ 실증 착수 전 진출국 인허가·개인정보 요건 확인과 IRB·DRB 심의 신청 지원
차별화 방안	○ 국내 의료기관 실증 경험이 있는 기업이 해외 현지 실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국내 사전검증, 심의, 해외 실증처 협의를 한 과제로 지원 ○ 정밀의료빅데이터플랫폼(10개 병원 약 50억건)과 데이터안심존을 국내 사전검증의 기준 데이터와 분석 공간으로 제공 ○ 인바운드 과제의 해외 파트너에 해당지역 체류, 입주 연계

2. 추진 배경 및 필요성

가. 정책・제도적 측면

□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・정보통신산업진흥원, 「아태 AI 특화지구(AHAP) 조성」 사업 추진**

○ 7개 AI・디지털 혁신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아태 AI 특화지구 조성, 실증(필수)을 포함하여 네트워킹・사업화・인증규제・정주(인프라) 등 과제 유형을 지역별로 구성

□ **강원 과제 : 「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브릿지 조성사업」(G-AHAP HealthBridge)**

○ 주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, 참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춘천・강릉 연계 거점 추진

○ (지원 내용) 상용화된 SW 중심 AI 헬스케어 솔루션의 해외 현지 실증과 해외 기업・기관과의 국내 공동 실증 지원

나. 시장적 측면

□ **국내 AI 헬스케어 기술의 해외 레퍼런스 부재 해결**

○ 국내 AI 헬스케어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나, 해외 현장에서 검증된 레퍼런스와 현지 인허가 대응 경험이 없어 아태시장 진출이 지연

○ 「데이터 활용 의료・건강 생태계 조성사업」(‘23~ ‘27)등으로 축적한 실증 레퍼런스가 국내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해외 레퍼런스・인증・판로로 확대 연결 하고자 함

□ **아태지역 수요와 국내 솔루션의 정합성**

○ 베트남 등 아태지역은 의료 접근성 개선과 진료지원 자동화 수요가 크고, 국내 기업이 보유한 AI 헬스케어 제품의 적용 가능성이 높음

□ **실증 이후 판로 단절 해소 필요**

○ (해외 협력) 행사 중심 교류의 공동실증・기술제휴・구매계약으로 이어지는 협력체계 강화

○ (사업화) 실증이 끝난 뒤 판로 확보, 구매계약, 현지 법인 설립까지 이어지는 지원 강화

○ (인바운드) 해외 AI 기업이 국내 기업・의료기관과 함께 실증할 수 있는 창구 개설 확대

다. 기술적 측면

□ 국가별로 다른 인허가·데이터 이용 요건

○ AI 헬스케어 솔루션은 국가별로 의료기기 해당 여부, 데이터 이용 승인(IRB·DRB),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이 달라 중소기업 단독 대응이 어려움

□ 국내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사전검증 환경 제공

○ 정밀의료빅데이터플랫폼(10개 병원 약 50억건)을 국내 사전검증의 비교 기준 데이터로, 데이터안심존을 국내외 기업의 분석 공간으로 제공

□ 국내 결과와 해외 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

○ 국내 사전검증 결과를 기준선으로 해외 실증에 같은 지표·프로토콜을 적용하여, 진출국 수요처에 제시할 수 있는 비교 결과 확보

라. 지역·정주 측면

□ 해외 파트너의 국내 체류·정착 지원 필요

○ 해외 기업·연구자가 국내 공동 실증을 위해 체류하려면 업무공간·주거·행정 지원이 함께 필요

□ 춘천·강릉의 기존 시설을 실증·체류 공간으로 활용

○ 춘천ICT벤처센터, 강원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, 한림대학교 Station-C 지원센터, 강릉워케이션센터, 강릉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, 강릉지식산업센터를 실증·체류·입주 공간으로 연계

○ (춘천) 강원대학교병원·춘천성심병원 등 도내 의료기관(수요조사 후 확정)과 데이터안심존에서 국내 사전검증 수행

○ (강릉) 강릉아산병원 등 건강관리 실증환경과 출연연·대학 시험분석 장비로 실증결과 검증

3. 대상 분야의 정의 및 범위

가. 대상 분야의 정의

본 공모의 교차실증은 국내 사전검증한 AI 헬스케어 제품을 해외 의료기관에서 실증하거나(아웃바운드), 해외 기업·기관과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함께 공동실증하는(인바운드) 과제를 의미함

나. 대상 분야의 범위

○ (대상분야) 사업기간 내 사업화 가능한 상용화 단계 AI 헬스케어 제품/솔루션

○ (적용 분야 예시) 진료지원(영상 판독보조, 방사선치료 지원, AI 문진), 환자 모니터링・욕창 평가, 건강검진 데이터 이상징후 예측, AI 건강관리 키오스크, 재활・웰니스 AI 등

다. 교차실증 추진 경로

○ 선정 기업은 국내 사전검증, 해외 현지 실증(또는 국내 공동 실증), 인허가 사전진단・해외 수요처 협약 순서로 과제 수행

[교차실증 추진 경로]

국내 사전검증	교차실증	사업화 연계
도내 의료기관 적용·검증, 정밀의료빅데이터플랫폼, 데이터안심존 분석, IRB·DRB 심의 등	해외 의료기관 현지 실증(아웃바운드), 해외 파트너와 국내 공동 실증(인바운드), 동일 지표·프로토콜 적용, 실증확인서 확보 등	진출국 인허가·AI 신뢰성 사전진단, 해외 수요처 실증협약·업무협약, 2차년도 계약·투자 협의 등

* 인바운드 과제는 해외 현지 실증 대신 해외 파트너와 국내 공동 실증 수행

4. 강원 AI 헬스케어 해외 진출 여건

1 아태 진출 대상국 수요 및 접점

❍ **(아태 수요)** 베트남 등 아태지역은 의료 접근성 개선과 진료지원 자동화 수요가 크고, 국내 SW 중심 AI 솔루션의 적용 가능성이 높음

- **(베트남)** 2024 한-베 비즈니스위크 상담 수요기업, 2025년 한-베 디지털헬스산업 심포지엄, MEDIPHARM 강원 공동관 접점과 강원특별자치도 베트남본부 행정 창구 보유
- **(싱가포르)** AI Verify 등 AI 검증체계를 제도적으로 운영하여 현장 적합성과 국제 검증 대응 함께 확인 가능
- **(일본)** 강원인공지능 암치유센터-준텐도대학교 의료협력 협약, 나고야 종합병원 등 의료 AI 공동연구 협력 추진

❍ **(2차년도)** 일본 등 기존 협력 국가 중 1개국 이상으로 실증 대상국 확대 예정

2 도내 의료 AI 실증 기반

❍ **(추진현황)** 「데이터 활용 의료·건강 생태계 조성사업」('23~'27, 총 450억원)으로 의료데이터 활용 실증 기반 구축·운영

- **(실증 실적)** 실증 과제 27건(실증 20, 초기 창업 7), '25년 실증 48건·인허가 17건·IRB 18건 지원
- **(인프라)** 정밀의료빅데이터플랫폼, 데이터안심존, AI헬스케어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('24~'27)

❍ **(연계 방향)** 국내 의료기관 실증 경험을 가진 기업이 해외 레퍼런스·인증·판로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실증 단계 지원

3 춘천·강릉 실증 환경

❍ **(춘천)** 강원대학교병원·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 의료기관 실증, 춘천ICT벤처센터, 강원대캠퍼스혁신파크, 한림대 Station-C지원센터 등 공동연구(인재양성) 체류·정착 지원

❍ **(강릉)** 강릉아산병원 등 건강관리 실증환경과 ITS컨벤션센터·지식산업센터·워케이션센터·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체류·정착 시설 보유

강원 아태 AI 특화지구 추진 방향

❍ **국내 사전검증과 아태 지역 현지 실증을 하나의 과제로 지원하여 참여기업의 해외 레퍼런스 확보**

❍ **아웃바운드·인바운드 병행으로 해외 AI 기업·인재의 춘천·강릉 유입과 정착 연계**

5. 사업 추진계획 (2개년)

비전 — **아태 ·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브릿지 구축**

목표 — **실증 7개 과제 지원(아웃바운드 4, 인바운드 3)**

전략

① (빠른 실증) AI헬스케어 지원 선정 후 '27년까지 실증
② (양방향) 아웃바운드·인바운드 교차실증 지원
③ (후속 연계) 인허가 사전진단, 체류·정착 지원

사업별 추진과제

국내기업의 해외 레퍼런스 확보	해외 파트너와 국내 공동 실증	실증 성과의 판로 · 정착 연계
○ **실증 (4건)** - 춘천 : 3건 - 강릉 : 1건	○ **실증 (3건)** - 춘천 : 1건 - 강릉 : 2건	○ **후속 지원** - 인허가 사전진단 - 수요처 매칭·연수
아웃바운드 실증	**인바운드 공동실증**	**인증·사업화·정주 연계**
○ 국내 사전검증 실증 ○ 정밀의료 기준 데이터 ○ 데이터안심존 제공 ○ IRB·DRB 심의 지원 ○ 해외 현지 실증(PoC)	○ 해외 파트너 공동 실증 ○ 데이터안심존 분석 ○ IRB·DRB 심의 지원 ○ 체류형 실증(강릉권) ○ 실증확인서 확보 ○ 지식산업센터 입주 연계	○ 진출국 인허가 진단 ○ AI 신뢰성 진단 ○ 개선 컨설팅 ○ 실증협약·업무협약 ○ 글로벌 네트워크 ○ 실증처 인력 국내 연수

실증기업 공통 지원

① **데이터안심존 분석환경 및 정밀의료빅데이터플랫폼 기준 데이터 제공**
- 클라우드 기반 분석·시각화 도구, AI 딥러닝 학습환경, 화면전송 방식 가명정보 분석

② **도내 의료기관 국내 사전검증과 해외 의료기관 현지 실증 연계**

③ **실증 착수 전 진출국 규제·데이터 법제 검토 및 인허가 사전진단 지원**

④ **해외 수요처 매칭, 실증협약·업무협약 체결 및 체류·정착 지원**

6. 추진 근거 및 관련 규정

□ 추진 근거

❍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(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) 제27조(사업)

o 제26조(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)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(이하 "산업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o 제27조(사업)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~9. (생략)

10.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·연구

나.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

❍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1조(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)

o 제21조(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) ①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·자동화·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(이하 "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"라 한다)를 개발·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❍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(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)

o 제32조(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)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·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~12. (생략)

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(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
o 제14조(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① 시·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,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□ 관련 규정 (관련법령 참고자료 참조)

❍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(과기정통부) 및 관련 부속지침

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

❍ 개인정보 보호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

❍ 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」 준용

Ⅱ. 사업 지원내용

1. 공모 개요

❍ (목　　적) AI 헬스케어 제품의 아태 지역 협력체계 확보로 국내외 의료현장 공동 실증(검증)과 인증 확보를 통한 수출 등 사업화 성과 달성

❍ (공모일정) 2026. 11. 4.(수) ~ 2026. 11. 18.(수) 15:00까지

❍ (사업기간) 1차년도: 2026. 11. 1. ~ 2027. 4. 30. / 2차년도: 2027. 5. 1. ~ 2027. 12. 31.

【 연차별 교차실증 추진 예시 】
본 사업은 국내·외 기업 간 양방향 실증을 지원하는 교차실증 사업으로,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실증 방향을 상호 교차하여 추진
- **추진 개요:** 1차년도 아웃바운드 실증을 수행하는 경우, 2차년도에는 인바운드 실증을 수행하며,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
- **예시①** 1차년도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(아웃바운드) → 2차년도 해외기업의 국내 현지 실증(인바운드)
- **예시②** 1차년도 해외기업의 국내 현지 실증(인바운드) → 2차년도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(아웃바운드)

❍ (모집 분야)

❶ 아웃바운드 실증 지원(TRL 5단계 이상): 3개 과제

- 국내 의료현장에서 사전검증 후 해외 의료기관 실증이 가능한 제품
- 춘천 2개 과제, 강릉 1개 과제

❷ 인바운드 공동실증 지원(TRL 5단계 이상): 2개 과제

- 해외 기업·(의료)기관과 국내기업이 도내(춘천, 강릉) 실증환경에서 공동 실증이 가능한 제품
- 춘천 1개 과제, 강릉 1개 과제

❍ (대상기술) 사업기간 내 사업화 가능한 상용화 단계 AI 헬스케어 제품

❍ (지원규모) 600,000천원(1차년도 기준, 5개 과제)

- 과제 당 지원금 **120,000천원(1차년도)**, 80,000천원(2차년도)

* 2차년도 지원 규모는 정부·지자체 예산 확정 후 결정 (정부 예산심의, 연차평가 등에 따라 변동)

**** 민간부담금 의무 매칭**

(중소기업) 지원금(국비+지방비)의 25%,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 10%

(중견기업) 지원금(국비+지방비)의 30%,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 13%

2.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

❍ 지원대상: AI 헬스케어 중소·중견기업 단독 또는 의료기관·대학·유관기관과 구성한 컨소시엄(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의료기관)

- 상용화·제품화 단계의 SW 중심 AI 헬스케어 솔루션(비의료기기 품목 우선)으로 2027. 4. 30.까지 국내 사전검증과 해외 현지 실증 착수가 가능한 과제
 ※ 신규 개발이 필요한 과제가 아닌 상용화·제품화된 솔루션의 실증 과제에 한함
- 국내·외 사전검증은 도내 의료기관 또는 건강관리 현장에서 수행 가능한 과제
 ※ 의료기관: 상급종합, 종합병원 등 공고일 기준 영업 의료기관
 ※ 아웃바운드 분야는 진출국 실증처(후보) 협의 계획, 인바운드 분야는 해외 파트너 참여의향서 제출 필수
- 국내 의료데이터는 주관기관 데이터안심존 내에서 분석하며, 데이터는 DRB 승인 후 이용

· 일괄지원(진흥원)
- 데이터안심존 전용 계정 및 분석환경(클라우드 분석·시각화 도구, AI 학습환경) 제공
 ※ 다만, IRB/DRB 등 소요비용 발생 시 과제별 사업비로 책정 가능
- 이용 방식: 전용 계정 접속, 화면전송 방식 분석, 결과값은 검토 후 반출

· 데이터 활용 절차
- 이용 신청 → DRB 승인 → 데이터안심존 내 가명정보 분석 → 결과값 검토 후 반출
- 해외 파트너의 국내 데이터 분석도 데이터안심존 안에서 수행(국외 반출 불가)

※ 해외 현지 데이터는 현지 IRB 승인 범위에서 처리하고 국내에는 집계 성능지표만 공유

- 1개 기업(기관)이 본 지원사업의 실증과제에 2개 이상 지원 불가
 ※ 단 의료기관의 경우 복수 과제 참여기관 가능

❍ 지원제외 대상 (주관 및 참여기업/기관 모두 해당)

- 상용화·제품화되지 않아 신규 개발이 필요한 과제
- 국내 의료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전제로 하는 과제
- 제안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
 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유사중복 검토결과 제출
- 공고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(주관기업, 주관기업의 대표, 참여기업, 참여기업의 대표, 총괄책임자 등)는 신청불가
-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, 지방세 및 정부관련 기관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, 기술료 등의 미납기업
-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관(면제요건 적용 기관은 예외)
- 기업의 부도 /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·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

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- 최근 1년 이내 결산 기준 자본(완전)잠식(컨소시엄의 경우 모두)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결정 기업

《 실증과제 개발 단계 자격 》

□ **자격요건 : 상용화·제품화 단계의 솔루션 TRL 5단계 이상(신규 개발 과제 제외)**



※ 기술성숙도는 첨부된 '기술 유형별 기술성숙도(TRL) 단계 정의'를 참고하여 수행계획서에 기재

3. 지원 분야

가. 공모과제 : 아태 AI 헬스케어 글로벌 교차실증 5개 과제

프로그램명	과제내용	비고
아웃바운드 실증 지원사업	국내 의료기관·건강관리 현장 사전검증 후 베트남·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 의료기관 현지 실증	춘천권 2건 강릉권 1건
인바운드 공동실증 지원사업	해외 기업·기관과 국내기업이 데이터안심존·강릉권 체류형 실증환경 등 도내에서 공동 실증	춘천권 1건 강릉권 1건

①사업기간 내 사업화 가능한 상용화 단계 AI헬스케어 제품, ②2027. 4. 30.까지 국내 사전검증 완료 및 해외 현지 실증 착수 가능성, ③실증 결과의 해외 수요처 협약·계약 연계 가능성 등 중점 검토

나. 실증과제 공통목표(MBO)

구 분	목표치	비고
신규고용	지원금 1억 원 당 0.5명 이상 ※ 사업 성과지표(신규 고용 창출) 기준 준용	고용유지 시 차년도 성과 인정 (4대보험가입증명서)
실증	사업기간 중 1건 이상 (아웃: 해외 현지 / 인: 국내 공동 실증)	실증확인서 (실증처 발급)
해외 협력 (MOU등)	실증협약·업무협약 1건 이상	협약서 사본
데이터 활용 (신청/승인)	사업기간 중 IRB 또는 DRB 심의 승인 1건 이상	IRB(DRB) 신청서/심의결과서
네트워크 참여	글로벌 네트워크 프로그램 1회 이상 참가	참가 확인서, 상담일지

※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내 채용한 자도 고용 인정하며, 관내(춘천·강릉시) 지역인재 채용에 한함
※ 당해연도 신규고용 인원에 대하여 차년도 고용유지 시 고용성과로 인정
※ 실증확인서는 실증처가 발급하며, 1차년도 미완료 과제는 2차년도 초('27.5~6) 추가 검증
※ 측정 지표는 솔루션 유형별 표준 측정지표(안)를 기준으로 실증처와 협의하여 확정

4. 지원 내용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연차별 지원내용</th></tr>
<tr><td>아태 AI 헬스케어 / 글로벌 교차실증</td><td>
○ 국내 사전검증 후 아태 지역 의료기관 현지 실증 지원(아웃바운드 3건)

○ 해외 기업·기관과 국내기업의 국내 공동 실증 지원(인바운드 2건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차년도</th><th>2차년도</th><th>’28년~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추진내용 및 일정</td><td colspan="3">실증 5건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공모·선정 → 국내 사전검증 → 단계평가 → 해외 현지 실증 → 실증확인서 확보</td></tr>
<tr><td>1차년도 실증기업 계속 지원 심사</td><td colspan="2">2차년도 실증 7건(계속·신규), 인바운드 접수</td></tr>
<tr><td>목표</td><td>- 실증 5건
(아웃 3·인 2)</td><td>- 실증 7건</td><td>- 운영협의체 전환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※ 2차년도 지원은 연차평가 및 예산 확정에 따라 결정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후속(연계) 지원

인증·네트워킹
·정주 연계
(일정참조)</td><td>
○ 진출국 인허가 사전진단, 해외 수요처 매칭,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차년도</th><th>2차년도</th><th>’28년~</th></tr>
<tr><td>추진 내용 및 일정</td><td colspan="3">- 인허가·AI 신뢰성 사전진단 및 개선 컨설팅
- 해외 현지 성과공유 세션(’27.2) 및 G-AHAP Global Day 참가
※ 수행기관 용역으로 제공(현금 지급 없음)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* 연차별 예산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규모 변동 가능</td></tr>
</table>
○ 인바운드 참여 해외 인력 체류형 실증 지원(강릉권)

○ 해외 실증처 실무인력 국내 연수(춘천권)

○ 데이터안심존, 정밀의료빅데이터플랫폼 분석환경 제공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차년도</th><th>2차년도</th><th>’28년~</th></tr>
<tr><td>추진 내용</td><td>- 체류·연수 운영
- 정주 연계</td><td>- 체류·연수 확대
- 정주 연계</td><td>- 운영협의체 전환
- 상시 접수 운영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추진 일정</td><td colspan="3">실증처 인력 국내 연수(5명)·인바운드 체류(3명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법인 설립 행정지원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 연계</td></tr>
<tr><td>목표*</td><td>정주 연계
8명</td><td>정주 연계
8명</td><td>운영협의체 전환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후속(연계) 지원 프로그램(실증기업 대상)

○ 데이터안심존 분석환경 제공
- 클라우드 기반 분석·시각화 도구, AI 딥러닝 학습환경, 전용 계정·화면전송 방식 분석

○ 정밀의료빅데이터플랫폼 기준 데이터 제공
- 국내 사전검증의 비교 기준 데이터로 활용(DRB 승인 후 데이터안심존 내 가명정보 분석)
- 「데이터 활용 의료·건강 생태계 조성사업」의 IRB·DRB 지원 절차를 본 사업 실증에 적용

○ 인증·규제 대응 지원
- 진출국 규제 요건 조사, 과제별 법제 검토 의견서, 인허가·AI 신뢰성 사전진단, 개선 컨설팅, 시험·기술문서 작성 지원

○ 해외 수요처 매칭 및 협약 지원
- 발굴한 해외 수요처와 실증기업을 매칭하고 실증협약·업무협약 체결, 1차년도 사업화 진단, 2차년도 계약·투자 협의 연계

○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그램
- 해외 현지 성과공유·기업매칭 세션('27.2.) 및 G-AHAP Global Day(강릉) 운영
- 기술시연, 1:1 기업매칭, 투자 IR 참가 지원

○ 체류·정착 지원(춘천, 강릉)
- 인바운드 참여 해외 인력의 강릉워케이션센터 체류, 강릉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정착 서비스, 강릉지식산업센터, 춘천ICT벤처센터 등 입주 연계(법인설립 시 행정절차 지원)

○ 해외 실증처 인력 국내 연수(춘천, 강릉)
- 아웃바운드/인바운드 실증처 실무인력이 공동실증에 참여하여 데이터 분석 절차, 실증 프로토콜, IRB 운영 방식 습득하는 경우(항공·숙소·체류비 지원)

※ 후속(연계) 지원은 주관·참여기관 용역과 보유 인프라로 제공하며, 실증기업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
※ 단, 실증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그램(해외 현지세션 또는 G-AHAP Global Day)에 사업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참가 필수

Ⅲ. 공고 및 선정 절차

1. 추진 일정

구 분	일 정	주요내용
과제 공고 및 접수	· **'26. 11. 4.(수) ~ '26. 11. 18.(수), 15:00** 限	· 과제공모(홈페이지 등) · 과제 접수(메일주소 공지)
⬇		
서면(적합성) 검토	· '26. 11.	· 사업내용, 지원자격 등 적합성 검토 및 현장점검(필요시)
⬇		
과제 선정 (발표)평가	· '26. 11. 24.(예정) ※ 서면(적합성) 검토 후 해당과제별 개별 안내	· (평가위원회) 제안발표평가 · 접수 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⬇		
과제 선정 및 협약	· 선정결과 통지 '26. 11. ~ · 사업비 조정 심의 · 협약체결	· 선정통보 및 이의신청 · 최종 대상자 선정(사업비조정심의) · 수행과제 승인 및 협약
⬇		
1차 사업비 지급	· '26. 12. ~	· 1차 사업비 교부 (지원금의 70% 내외)
⬇		
사업수행	· '26. 11. 1. ~ '27. 4. 30.(사업기간)	· 월별 성과모니터링 보고 (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)
⬇		
단계평가·중간점검 / 2차지원금 지급	· '27. 2.	· 국내 사전검증 단계평가 (필요시)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완성도 점검 · 2차 사업비지급 (지원금의 30% 내외)
⬇		
결과평가 결과보고서 제출	· '27. 3. 중 (별도 안내예정)	· 1차년도 결과평가, 성과 통합집계
⬇		
사업비 정산, 성과관리	· 연차협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(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)	· 사업비 정산 및 환수금 반납 (지정회계법인에 정산)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. 평가 방법 및 기준

❍ 평가위원 구성

- 구성인원 : 주관·참여기관 권역별 평가위원회 구성
- 주요역할 : 수행과제별 발표평가의 선정 관련 심사 및 사업비 조정

❍ 평가방법

단계	평가방법	평가자(점검자)	평가내용
1	적합성 검토 (현장점검)	강원정보문화 산업진흥원	· 사업내용, 지원자격,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 (※ 제출서류 및 연구환경 현장 점검 - 필요시)
2	발표평가	평가위원회 (주관·참여기관)	· 필요성 / 타당성 / 기술성 / 해외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
3	종합심의		· 수행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후 지원과제 및 예비기업 선정

❍ 1단계 : 적합성 검토

- 제출서류 검토, 사업내용의 부합성, 지원자격(참여제한) 적격 여부 검토
 ※ 필요 시 제출서류 확인을 위한 사업장 현장 점검 수행

❍ 2단계 : 발표평가

- 과제별 총괄책임자의 발표 (발표 15분 및 질의응답 15분)를 통한 평가
 ※ 총괄책임자 불참시 대리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 중 상위자가 위임장 및 불참근거자료를 지참하여 참석 필수(자유양식)
-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**고득점 과제 우선 선정** (평가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)
-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『사업성』▸『기술성』▸『타당성』▸『필요성』 평가항목 고득점 순으로 정함(위의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)

❍ 3단계 : 종합심의

-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과제와 예비기업(2개사 이상) 선정
- 선정과제 포기 시 예비기업 순으로 선정(공문으로 주관기관에 즉시 제출)

※ 최종 협약 대상과제는 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하여 확정

❍ 평가배점표

평가항목	세부항목	평 가 지 표	배점
필요성 (10)	해외 실증 필요성	o 진출 대상국 수요와 제안 제품의 적합성 o 해외 레퍼런스·인증 확보의 필요성 및 시급성	10점
타당성 (20)	추진계획 실현가능성	o 국내 사전검증 의료기관 및 해외 실증처(후보) 협의 등 준비성 o 2027. 4월까지 국내 사전검증 완료 및 해외 현지 실증 착수 가능성 o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	10점
	실증 설계의 명확성	o 비교 기준선, 핵심 지표, 측정 방법 설정의 타당성 o 데이터 활용 심의(IRB·DRB) 및 데이터 보안 관리 계획의 적정성	10점
기술성 (20)	완성도/ 차별성	o 상용화·제품화 수준 및 국내 실증·도입 실적 o 유사 솔루션 대비 차별성 및 진출국 적용 가능성	10점
	추진체계 적절성	o 실증처·의료기관·해외 파트너 등 수행체계 구성의 적절성 o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기관(기업) 구성, 업무분장 등의 적절성	5점
	총괄책임자 /연구원능력	o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실증·사업화 및 해외 진출 실적 o 수행기관/참여인력의 전문성, 역할분담/구성의 구체성	5점
사업성 (50)	해외 사업화 가능성	o 실증 결과의 해외 수요처 협약·계약 연계 가능성 o 진출국 인허가·인증 대응 계획의 구체성 o 2차년도 계약·투자 협의 계획의 구체성	15점
	경제성	o 수출·매출 기대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	5점
	시장성	o 진출 대상국 시장 규모 및 진입 가능성 o 현지 유통·판매 파트너 확보 가능성	10점
	실증처 확보 수준	o 국내 사전검증 의료기관 및 해외 실증처(후보) 확보 수준 o 실증 협력 의향서(확약서) 제출 여부	10점
	지역기여도	o 춘천·강릉 거점 설치 및 해외 기업·인재 유입 연계 가능성 o 신규 고용 계획	10점
합 계			100점

Ⅳ. 사업신청 및 접수

1. 신청 및 접수

❍ 접수기한: 2026. 11. 18.(수), 15:00까지(※제출기한 초과 시 불인정)

❍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(**춘천** ysh@gica.or.kr / **강릉** yujin@gsipa.or.kr)

- (재)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gica.or.kr) 또는 (재)강릉과학산업진흥원(www.gsipa.or.kr) 공지사항에서 본 공고문 및 공모안내서 다운로드
-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날인된 스캔본 제출

❍ 제출서류

번호	제출서류 목록	주관	참여	부수
1	o 제안 발표자료(PPT, PDF 파일)	○		1
2	o 수행계획서	○		1
3	o 해외 실증처(후보) 협력 의향서 또는 해외 파트너 참여의향서(해당 시)	○		1
4	o 국내 사전검증 의료기관 실증확약서	○		1
5	o 주관 및 참여기관 주요인력 이력(개발자/기획자) 각 1부	○	○	1
6	o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 점검표	○	○	1
7	o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○	○	1
8	o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(참여인력 모두 해당)	○	○	1
9	o 현금 출자(납입) 확약서(참여기관의 경우 해당시)	○	○	1
10	o 주관(기업)의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기업의 경우 필수) 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/)에서 확인 가능 ※ 주관기업이 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확인서 제출	○	○	1
11	o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1부 ※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(http://ntis.go.kr)의 R&D관리시스템에서 중복성 사전 검토 결과서 출력	○		1
12	o 국세 납세증명서 (국세청 홈텍스 발급) / 지방세 납입증명서	○	○	1
13	o 수행기관(주관/참여) 법인등기부등본(참여기관의 경우 해당시), 사업자등록증 각 1부	○	○	1
14	o 법인인감증명서(법인기업 필수), 사용인감계(해당시)	○	○	1
15	o 표준재무제표증명원(최근 2년, 국세청 홈텍스 발급) 각 1부.	○	○	1
16	o 도내 해당지역 지사·연구소·공장 증빙 서류 (사업자등록증,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, 공장등록증)	○	○	1

※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전까지 이메일로 날인된 스캔본 1부를 제출하고, 발표평가 당일 원본 (1번~16번, 사본제출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) 1묶음 제출(발표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)

※ 제출증빙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

※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 상기 표의 제출서류 제출 필요 (단일 공모기업은 주관서류만 지참)

2. 문의처

공모총괄, 춘천 과제	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	윤성훈 대리	033-245-6121	ysh@gica.or.kr
강릉 과제	강릉과학산업진흥원	정유진 대리	033-650-3316	yujin@gsipa.or.kr

Ⅴ. 기타 사항

1. 사업 관리

❍ (컨소시엄의 경우) 과제수행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(기관) 역할 구분

구분	주관	참여	비고
사업협약	○	○	
이행보증보험 제출	○	○	각각의 지원금에 대하여 제출(주관기관 취합제출)
수행계획 변경신청	○		참여기관의 변경신청시 주관기관과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하여 주관기관의 공문으로 변경신청
사업비 교부신청	○		교부신청은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공문으로 신청하고 사업비는 각각 교부
회계정산수수료 부담	○		
전담기관과의 주요협의 자료공유, 취합, 제출	○		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제출은 주관기관이 수행

※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의 사업비 비중(참여율 및 예산)은 50% 이상 구성 (3개사 이상 컨소시엄 구성 시 40% 이상 반영)

❍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

- 수행기업(기관)으로 선정된 기업(기관)은 선정결과 통보 후 최대 1개월 이내에 각 지역별 기관과 협약 체결
 (평가/심의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·보완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)
- 주관기관은 수행기업(기관)에 사업비를 분할(선금, 잔금) 지급
 ※ 1차: 70%, 2차: 30% (중간점검 후 지급 예정이며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.)

❍ 진도점검 및 성과관리

- 매월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을 주관기관에 월간보고서로 제출
 (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, 필요 시 현장방문 확인)
- 점검내용
 - 과제수행 진행상황(추진일정 대비 실적달성 여부 등)
 - 사업비 집행현황(계획 대비 실적)
- 단계평가 및 중간점검 (필요시 현장방문 진행)
 - 국내 사전검증 결과를 기준선 대비 성능 기준으로 평가하여 해외 실증 진행 여부 결정
 -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보완계획을 받거나 예비기업 투입
 - 중간점검(‘27.2)에서 과제 진행상황과 사업비 집행 적정성 점검 후 2차 사업비 지급

- 결과평가(1차년도)
 - 수행기업(기관)은 주관기관의 제출안내에 따라 결과보고서와 실증확인서를 제출하고, 실증 목표 대비 추진 일정 및 실적 등 평가
 - 실증 결과 수준, 해외 수요처 연계 정도, 성과물, 2차년도 계획 등 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“미흡” 판정 시 2차년도 “지원중단” 결정

❍ 결과평가 기준

- 정량평가(MBO) 결과 (30% 반영)

구 분	목표치	배점	비고
신규고용	지원금 1억 원 당 0.5명 이상	10	고용유지 시 차년도 성과 인정 (4대보험가입증명서)
단계평가	기준선 대비 성능 기준 충족	10	단계평가 결과서
실증	1건 이상 (아웃: 해외 현지 / 인: 국내 공동 실증)	30	실증확인서 (실증처 발급)
해외 협력	실증협약·업무협약 1건 이상	20	협약서 사본
데이터 활용 (신청/승인)	IRB 또는 DRB 심의 승인 1건 이상	10	IRB(DRB) 신청서/심의결과서
네트워크 참여	1회 이상	10	참가 확인서, 상담일지
사업비집행률	중간점검 40%, 결과평가 98% 이상	10	사업비 계좌 증빙
합 계		**100**	

※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내 채용한 자도 고용 인정하며, 관내(춘천·강릉시) 지역인재 채용에 한함
※ 당해연도 신규고용 인원에 대하여 차년도 고용유지 시 고용성과로 인정
※ 측정 지표는 유형별 표준 측정지표(안)를 기준으로 실증처와 협의하여 확정

- 정성평가 결과 (70% 반영)
 - 주요 평가항목 달성을 위한 수행기업(기관)의 추진전략 및 이행 적극성, 해외 실증처 협력 수준, 사업화 가능성 등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추후 별도안내

❍ 기타 사항

- 실증과제 수행기업(기관)은 사업 종료 이후 진흥원이 성과자료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
- 실증과제 최종선정 후, 협약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발급 의무

구 분	제출시기	보험금액	보험기간
이행보증보험증권	1차 지원금 신청 전까지	지원금의 100%	협약기간 + 60일

※ 컨소시엄의 경우 수행기관별 협약금액

- 총괄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부득이한 경우 상세 사유와 함께 전담기관과 사전 승인 필수(협약변경 승인 대상)
- 기술료의 징수 : **비대상**

2. 사업비 산정요령

❍ **사업비 산정개요** ※ 현금사업비 기준이며,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의 합으로 산정

-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수행기관 부담금(현금+현물)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산정

<정부지원금 기준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>

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'별표 1'적용

1. 정부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업부담금 기준

중소기업	중견기업	공기업·대기업	그 외
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5% 이내	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% 이내	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% 이내	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100% 이내

2. 수행기관별 현금 부담 기준

중소기업	중견기업	공기업·대기업	그 외
기업부담금의 10% 이상	기업부담금의 13% 이상	기업부담금의 15% 이상	필요시 부담

*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매칭 없음(병원 등)

3.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수행기관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으로 매칭 가능

- (인건비 계상기준) 참여 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인건비
- (유형자산 계상기준) 장비, SW, 설비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내용 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는 자산에 한해 구입가(VAT제외) 20% 이내로 산정
-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은 국비 지급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
- 총사업비 대비 기업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

※ 기업규모 구분 (중소.중견.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)

1. "중소기업"이라 함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
2. "중견기업"이라 함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
3. "대기업"이라 함은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.
4. "공기업"이라 함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
5. "그 외"이라 함은 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등

- 사업비 산정 기준은 '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지침'을 준용, 그 밖의 사항은 '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'에 따름

❍ 인건비 산정

- 인건비 산정 시, 수행기업(기관)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
- 인건비는 현금사업비의 40% 이내로 산정 ※ 의무고용 초과 채용시 50%까지 산정가능
- 신규채용 인원은 협약 후 1개월 이내 채용 및 과제 완료시까지 유지 의무
- 사업기간 내 신규채용 후 과제 완료시까지 그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인정함 (다만 과제 기간 중 신규 채용인원이 퇴사하고, 퇴사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는 인건비 지급을 인정, 대체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기존 인원 인건비 또는 타 비목으로 변경 불가 및 사업비 정산 시 반납)
- 인건비는 연봉총액과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
 ※ 인건비 = 연봉총액(계약금액) / 해당년도 사업기간 × 참여기간(00개월) × 참여율
- 총괄책임자는 최소 30%이상, 참여인력은 최소 10%이상 참여

❍ 기타 사업비 산정

-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의 사업비 비중(참여율 및 예산)은 50% 이상 구성
 (3개사 이상 컨소시엄 구성 시 40% 이상 반영)
- 재료비 : 30%이내로 산정(부품, 부속품 등 소모성 재료비-일반수용비로 산정)
- 용역비 : 30% 이내로 산정(연구용역비, 일반용역비로 산정)
- 기타운영비+사업추진비 : 총 사업비의 10%이내 산정
- 사업추진비(회의비:식대, 다과) : 인당 최대 30,000원
 ※ 식대 인당 최대 3만원 / 다과 : 인당 최대 5천원 / 식대+다과 : 인당 최대 3만원
- 특허(출원, 등록) : 일반수용비로 산정
- 컨소시엄內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규모는 기관별 역할,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
-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시 비율 정산
- 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검토(심의·조정)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는 축소·조정 및 비목별 추가/변경/삭제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
- 회계정산비용(중간평가, 결과평가) 의무 편성(주관기업만 산정)

<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(단위:천원)>

<table>
<tr><th>구분[지원금+민간부담금(현금)]</th><th>표준
수수료</th><th>가산금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5천만원 미만</td><td>600</td><td rowspan="7">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
<table><tr><th>참여기관 수</th><th>가산금</th></tr><tr><td>0개</td><td>없음</td></tr><tr><td>1개</td><td>표준수수료의 10%</td></tr><tr><td>2개 이상</td><td>표준수수료(1개 기관 추가시마다)의 5%</td></tr></table></td><td rowspan="7">부가세
포함
/
요율은
변경가능</td></tr>
<tr><td>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</td><td>800</td></tr>
<tr><td>1억원 이상 3억원 미만</td><td>1,000</td></tr>
<tr><td>3억원 이상 5억원 미만</td><td>1,500</td></tr>
<tr><td>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</td><td>1,600</td></tr>
<tr><td>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</td><td>1,800</td></tr>
<tr><td>30억원 이상</td><td>2,100</td></tr>
</table>

3. 기타사항 안내

-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-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등록 마감일 내에 서류 일체를 과제책임자 또는 과제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이메일로 날인된 스캔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평가 당일 원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함
- 참가 자격이 있는 기업(기관)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평가 관련 세부 추진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증빙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 하며,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. (단, 전담기관 요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은 제외)

※ 협약후 세부 추진 사항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 및 주요사항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함